



본란의 기사는 본회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와 무역협회의 「주간 통상정보」를 발
췌한 것이며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1. 美반도체업계, 한국의 반도체보호법안에 불만제기

미국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n)는 최근 외국의 반도체 칩 Mask Works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입안중인 보호법안이 미국 등 주요반도체 생산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호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정부는 미국관련업계의 이러한 의견제시가 한국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도체보호법(SPA)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産 반도체에 대해서 호혜적인 보호대상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정부의 대응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88년 도입된 미국의 반도체 보호법(Semiconductor Protection Act)은 특정국가의 반도체 칩이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가 미국産 반도체 칩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보호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관련업계는 특히 한국이 입안중인 법안의 원안(Draft)에 담긴 3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약 이 3개의 조항이 최종입법될 경우 美반도체보호법(제914)조에 따른 호혜적인 대우제공을 권고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반도체 칩의 Mask Works은 복제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의 개발시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에도 불구하고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불법 칩의

범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반도체 칩의 Mask Works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현재 한국의 반도체칩이 미국의 반도체칩 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하의 보호대상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반도체 보호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생산업자들은 한국이 현재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3번째를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보호장치 마련이 법규마련을 기피하고 있는 諸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SIA는 8월 5일 한국 상공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보호법 입법은 현재 보호규정을 마련치 않고 있는 대만같은 반도체 생산국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원인은 오는 가을경 정식법안으로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며 별도로 코멘트를 위해 이미 미국정부에 복사본이 송부되었다고 한다. SIA가 우려하고 있는 3가지 중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미국은 同조항(원안의 18조)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반도체 칩 제품에 대한 국내투자 및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특허권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법률상 정당하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측은 이 조항이 모호하고 광의적으로

정의된 제반 조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예를 들면 “주요 국내목적” 등) 특히 기술소유주들이 강제실시권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메카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상공부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도 있다(정책결정은 상공부산하의 한 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멤버의 구성과 결정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SIA는 강제실시권 제도가 외국의 저작권리소유자를 차별하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만약 이 조항을 도입할 경우는 허가권한의 남용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선의 취득자(Innocent Infringers)

회원국 35조는 반도체 칩의 소유권자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해적판 칩을 판매 및 이전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지 없이 이를 사용한 기업에 대해 불법 칩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SIA는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항이 선의취득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은채 불법복제 칩을 사용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보호대상 반도체 칩의 범위(Coverage)

원안은 불법칩이 사용되어 최종제품으로 수입 및 유통될 경우 이를 방지할 권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조업자가 칩을 구매할 때 굳이 합법적인 칩 제조업자와 불법복제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SIA의 의견제시에 대해 한국정부의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 제2차 NAFTA협상, 협상진척 결과보고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3국무역장관은 8

월 19~20일, 미시애틀에서 NAFTA 제2차 고위협상을 가지고 광범위한 제문제들의 진전상황을 발표했다.

각국이 주요쟁점사항들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9월 18일까지 관세철폐계획을 3단계(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해 각단계별 대상품목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Serra Puche 멕시코 상공부장관에 의하면 이들 3국 대표들이 개별 실무그룹의 협상진척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단계 진입을 위한 지침을 실무그룹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협상의 특정분야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으나, 서비스, 투자, 재화 및 서비스교역, 그리고 분쟁해결 메카니즘과 같은 많은 분야에 진전이 있었다.

다음 고위회의는 10월 28일 멕시코 Zacatecas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장관들은 NAFTA협상의 최종시한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내년말까지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NAFTA협상의 1차 무역장관회의는 6월 12일 Toronto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당시 3국장관들은 분야별 실무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Serra Puche 멕시코 무역장관은 8월 20일, 3국 통상관계자들이 10월말까지 각국들의 정부조달관행, 농업보조금 및 표준제도를 비교한 일련의 조사보고서를 마련토록 명령했다고 밝히고,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北美자유무역협상이 멕시코 마킬라도라 산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 협상그룹내에 마킬라도라 소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킬라도라 소그룹은 현재의 「원산지규정 협상그룹」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각국들의 정부조달관행은 입수한 정보 부족으로 심도있게 토의 되지 못했으며 3국장관들은 동문제와 관련보다 정확한 정보를 관련 실무그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美國, 亞·太지역국가와의 경제관계 구축 검토

미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亞·太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관계 구축의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Sandra Kristoff USTR대표가 밝혔다.

Kristoff차관보는 8월 6일, World Broadcast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아·태국가중 호주와의 향후 통상관계에 대해 언급, 만약 호주가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에 관한 Framework협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더욱 긴밀한 경제관계(Closer Economic Relations) 구축문제를 토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은 기꺼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5~10년내에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FTA협상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FTA와 관련된 경제주체는 지리적인 근접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반드시 “共生(Symbiosis)”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부가 NAFTA內에 다른 국가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국가들이 일본경제에 의해 지배되거나 “엔 블럭”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태경제협력이사회(APEC)와 같은 메카니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계무역체제가 아시아, 북미 및 유럽의 3극 체제로 분열되는 것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국은 APEC가 소규모 지역그룹으로 분할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APEC 내부의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들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가 제한한 東아시아경제그룹(EAEG) 구상이 GATT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APEC의 보조수단일 경우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Kristoff대표는 이와 함께 APEC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관련국가들의 인식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세안국가들이 APEC가 하나의 제도화된 체제로 이행하는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APEC가 FTA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간주하는 국가가 있고 同그룹이 10~15년 이내에 일종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는 국가 또한 일부 있다고 밝혔다.

4. EC, 단일통화 창설을 위한 막바지 협상

EC가 EC중앙은행과 단일통화 창설을 위한 막바지협상에 돌입했다.

9월 2일, EC통화위원회는 EC경제통화동맹플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을 조정키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으며 EC재무장관들도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회동했다. 또한 EC재무장관들의 보좌관들도 3일 EC중앙은행과 단일통화 창설에 필요한 EC기본조약 수정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C회원국들은 12월초까지 EC경제통화동맹플랜의 조약초안 작성을 끝내고 12월말의 EC정상회담에서 이를 승인한다는 스케줄을 짜놓고 이에 맞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EC중앙은행과 재무당국의 고위실무자들로 구성된 EC통화위원회는 이번 회동에서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차관,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관한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거론된 내용중에는 EC통화통합의 최종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목표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역내 최고경제국수준과 1.5%포인트 내지 2%포인트의 차이를 갖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정적자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장기투자에만 가능하며 이 적자규모가 GNP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총공공부채규모는 일국 GNP의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C통화 및 정치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EC재무장관회의와 EC정상회담이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5. EC 단일시장

EC 집행위는 282개 조항의 단일시장 법안중 69개가 91년 12월말까지 채택되어야 한다고 발표. 이중 50개 조항이 주요 지침(Key Directives)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17개 조항에서 EC 각국 통상장관들간의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6. 통화동맹(Monetary Union)

네델란드가 경제 및 통화동맹에 관한 2가지 조속 접근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는데 이에는 엄격한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국(최소 6개국)들간 단일 화폐로서 통화동맹을 창설하고, 이들 6개국(독·불·덴·벨·화·룩)외에 기타국들은 경제적 기준을 충족시켜 합류할 때까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7. 한국·일본 확성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설

EC로 수입되는 Loud Speaker에 대한 덤핑 제조설이 있다. 대상 수출국은 명확치 않으나 한국 및 일본산 수입품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8. EC 반덤핑법

다음은 이탈리아 지방법원이 로마조약 177조와 관련 유럽 사법 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에 1983년 부과한 미국산까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문의한데 대한 ECJ의 답변 내용이다.

- ① 반덤핑 관세가 제품의 자국시장 내수가격(U\$)과 수출시장의 첫 독립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수출가격과의 차이점으로 표시되며 이때 환율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양 가격에 대한 환율은 같은 날 거래된 환율이 적용되며 수입품의 통관 가격 결정시 사용된 환율이어야 함. 관세를 부과한 규정(Regulation) 발효일의 것이 아니다.
- ② 덤핑마진 결정 및 내수와 수출가격의 비교방법에 관한 EC 반덤핑법 규정은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는데 쓰여지는 방법의 유효성과는 무관하다.
- ③ EC는 각 케이스마다 가장 효과적인 유형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으며 한계가격(Threshold Price)과 실제가격(Actual Price)간의 차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환율이 변동되는 非EC 통화로의 반덤핑 관세 표기는 해당 관세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다.
- ⑤ 반덤핑 관세가 상황변화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정당치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수입업자 등 여타 관련자는 유럽 사법 재판소(ECJ)에 해당 덤핑 관세부과 규정의 사법심사를 청원하기 보다는 EC 집행위에 해당 관세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9. EC·일본간 자유화 협정

EC 집행위는 EC와 일본간 원칙적으로 既 합의 되었던 자유화 조치의 제3단계로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 회원국들에 의해 적용된 일련의 물량규제조치의 철회를 EC 이사회(Council)에 제의했음.

현재까지의 조치는 대부분이 경제적 중요성

이 거의 없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향후 1992년 하반기에 오토바이, 자동차, 재봉틀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들이 논의될 때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 뉴스단신

① 프랑스의 Thomson SA社와 마쓰시타전기사회사인 Victor社와의 합작 회사인 "J2T Joint Venture社"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철회와 톰슨과 빅터간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베를린 공장 종업원 750명중 250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이 공장을 빅터사의 주 지분으로 Victor의 JVC레코더만을 생산하여 유럽 시장에 판매해 왔다.

한편 톰슨사가 관리하게 될 새 공장이 독일에서 1992년 중반경 설립 예정이며 베를린공장에서 톰슨사의 VCR 생산은 도시바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싱가포르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② 마쓰시타/필립스 대형 브라운관 생산 협의

필립스가 마쓰시타의 평면 대형 브라운관을 영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의가 양사간에 진행되고 있다.

③ 핀란드 EC 가입 신청 검토

핀란드 정부는 EC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④ 발틱 독립국가들

EC 12개국과 최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개국 외상회담에서 발틱 3개국은 긴밀한 교역과 경제 유대관계를 약속 받았다. 회의를 앞서 이들 3개국 외상들은 EC의 준회원국이 되기를 피력하였다.

11. Dunkel 사무총장, 금년내 UR종결 위한 각국의 결단 촉구

Dunkel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발간된 GATT의 '90년도 연차보고서(90 GATT Activities)를 통해 세계각국은 금년말까지 우루과이라운드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인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지금이라도 UR의 중대성을 재인식하고 포기할 수 없는 과업임을 인식한다면 금년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GATT체약국은 '91년 8월 현재 103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알제리·불가리아·중국·온두라스·네팔·파라과이 등이 가입신청을 함에 따라 GATT내에 실무작업단이 구성, 가입조건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기존 회원국은 폴란드(1967년 가입)와 헝가리(1973년 가입)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 가입의정서 개정을 위해 실무작업협상을 진행중이다.

同보고서에 따르면 '90년도의 세계교역은 3조弗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서비스교역은 25.7%인 7,700억弗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교역은 '89년의 7.5%성장에서 5%성장으로 위축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83년 이후의 연평균 성장세를 상회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상품 생산 증가율 4%를 상회하는 것이다.

GATT규정 이행과 관련, 던켈사무총장은 특히 분쟁해결을 위한 GATT패널보고를 각국에 수용토록 하거나 또는 엄격한 결론을 도출토록 하는 GATT의 조정권한이 미약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던켈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꾸준히 무역자유화를 추구해 온 개발도상국들과 동유럽 국가들의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12. 호주, 한국產 전선제품 반덤핑조사 개시

호주관세청(ACS)은 최근 한국產 전선제품

(Low voltage aerial bundled electric cable insulated with cross linked polyethylene : HS Code 8544 20 0000)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관세청의 반덤핑조사 개시결정은 MM Cables, Olex Cables and Pirelli Cables Australia Ltd社 등 호주측 관련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호주 전기전자제품제조업자협회(AEEM)의 제소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수출업체는 D 전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호주의 반덤핑조사 발표에 대해 한국업계에서는, 이번에 제소된 제품은 제품의 질적 수준이나 납기, 가격수준 등에 있어서 호주産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어 호주전력청 납품을 목적을 위해 수출된 것으로서 자국 공공기관에 조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호주업체측의 입

장에 비추어 제소근거가 매우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호주관세청은 지난 '88년에도 D전선社의 다른 전선제품(XLPE)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행, 89년 무협외 판정을 내린 바 있다(週刊通商情報 第5卷 48號, 第6卷 15號 참조).

호주 반덤핑절차에 의하면 호주관세청(ACS)은 금년 12월 11일까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려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은 10월 15일까지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호주로부터 반덤핑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가단주철관이음쇠, 자동차용 축전지, 시안화나트륨(이상 규제중), 염화폴리비닐, 저밀도 폴리에틸렌, 팩시밀리용지, 스텐레스용접강광(이상 조사중)과 이번에 조사 개시된 전선제품을 합해 총 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